

## 2020) 10개년 건축설비산업기사 과년도문제해설 3차 정오표[2020.2.25]

[1과목. 건축일반]

페이지	항 목	오	정
245	과년도기출문제 2018년 4회 20번 해설 수정	㉠ 상대습도 = $\frac{\text{포화수증기량}}{\text{현재수증기량}} \times 100(\%)$	㉠ 상대습도 = $\frac{\text{현재수증기량}}{\text{포화수증기량}} \times 100(\%)$

2020) 10개년 건축설비산업기사 과년도문제해설 2차 정오표[2020.9.1]

[4과목. 건축설비관계법규]

759페이지 ㉮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1. - 1)표

한솔아카데미 

구 분	소방안전관리 대상 특정소방대상물	제 외
특급 소방안전관 리대상물	㉮ 50층 이상(지하층은 제외)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㉯ 30층 이상(지하층을 포함)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(아파트는 제외함) ㉺ ㉮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이 200,000m <sup>2</sup> 이상인 것(아파트는 제외함)	동·식물원,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·취급하는 창고, 위험물제조소등, 지하구를 제외
1급 소방안전관 리대상물	㉮ 30층 이상(지하층은 제외함)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㉯ 연면적 15,000m <sup>2</sup> 이상인 것(아파트는 제외함) ㉺ ㉮에 해당하지 않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(아파트는 제외함) ㉻ 가연성가스를 1,000톤 이상 저장·취급하는 시설	동·식물원,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·취급하는 창고, 위험물제조소등, 지하구를 제외
2급 소방안전관 리대상물	㉮ 옥내소화전, 스프링클러설비·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(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)를 설치한 것 ㉯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,000톤 미만 저장·취급하는 시설 ㉺ 지하구 ㉻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 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	특급,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
3급 소방안전관 리대상물	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것	위 1~3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

페이지	항 목	오	정									
712	1. 방화구획 표 내용 수정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499 280 699 331">건축물의 규모</th> <th data-bbox="699 280 987 331">구 획 기 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499 331 699 383">10층 이하의 층</td> <td data-bbox="699 331 987 383">바닥면적 1,000m<sup>2</sup> (3,000m<sup>2</sup> ) 이내마다 구획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99 383 699 463"><del>지상층.</del> 지하층</td> <td data-bbox="699 383 987 463"><del>매층</del>마다 구획(면적에 무관)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99 463 699 584" rowspan="2">11층 이상의 층</td> <td data-bbox="699 463 987 584">실내마감이 불연재료의 경우 바닥면적 500m<sup>2</sup> (1,500m<sup>2</sup> ) 이내마다 구획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699 584 987 705">실내마감이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바닥면적 200m<sup>2</sup> (600m<sup>2</sup> ) 이내마다 구획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<b>필로티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</b></p>	건축물의 규모	구 획 기 준	10층 이하의 층	바닥면적 1,000m <sup>2</sup> (3,000m <sup>2</sup> ) 이내마다 구획	<del>지상층.</del> 지하층	<del>매층</del> 마다 구획(면적에 무관)	11층 이상의 층	실내마감이 불연재료의 경우 바닥면적 500m <sup>2</sup> (1,500m <sup>2</sup> ) 이내마다 구획	실내마감이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바닥면적 200m <sup>2</sup> (600m <sup>2</sup> ) 이내마다 구획	비 고  * ( ) 안의 면적은 스프링클러 등의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임.
건축물의 규모	구 획 기 준											
10층 이하의 층	바닥면적 1,000m <sup>2</sup> (3,000m <sup>2</sup> ) 이내마다 구획											
<del>지상층.</del> 지하층	<del>매층</del> 마다 구획(면적에 무관)											
11층 이상의 층	실내마감이 불연재료의 경우 바닥면적 500m <sup>2</sup> (1,500m <sup>2</sup> ) 이내마다 구획											
	실내마감이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바닥면적 200m <sup>2</sup> (600m <sup>2</sup> ) 이내마다 구획											
748	제2편 소방시설법 ① 총칙 1. 목적 수정	이 법은 화재와 재난·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치·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<b>이 법은 화재와 재난·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·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b>									